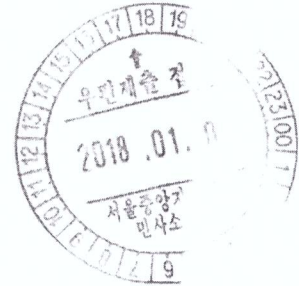


## 답 변 서

사 건 2017가소7560247 손해배상(기)  
원 고 전상화  
피 고 임 외 1인

3046



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2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.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소장의 기재 중 제1항 당사자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합니다.

원고의 청구원인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무변론 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거나 직권으로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. 1. 4.

피고2 임



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단독 귀중